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995년 12월 27일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1995년 12월 27일

제 120회 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사환경국장 조 규 린)

가. 제안 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 골자

○ 기능 : 오인광고 내용의 심의

- 주민건강의식 오인광고의 변경, 금지명령, 시정대상 심의

- 주민건강생활의 도민실천운동 추진

○ 구성 : 위원장 포함 7인이내, 임기 3년

- 위원장 →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→ 보사환경국장

- 간 사 → 보건과장

- 회의 :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
- 의견청취 : 관계공무원, 전문가,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기관 단체의 자료 필요시 협조요청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(안)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

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향후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 타 위원회, 협의회등의 운영이 "미진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"는 주민들의 지적을 고려할 때

제3조(기능)와 제12조(시행규칙)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기준의 수립 및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

4. 질 의 및 답 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경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8. 제 정 조 례 안 : 별 첨